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0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 송옥주·백승아·민병덕

한정애・박 정・이수진

한민수 · 이병진 · 염태영

추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준으로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이 실제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이나 건물 집합 단지의 경계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소음피해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의 경우에는 필지의 경계나 촌락의 생활 형태·지형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소 음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 항 등).

법률 제 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을 지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고시할 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제3항에 따라작성된 소음영향도와 다른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은 해당 지역의 경작지 비율·인구밀도 등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도시지역: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 속한 필지의 경계
- 2. 비도시지역: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에 연접 한 지역으로서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용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경계 설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부터 적

신 • 구조문대비표

혂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 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 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 제5조제1항 및 제4항-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다.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 시 등) ① ~ ③ (생 략) 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 설>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을 지 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고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 계 안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로 부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소 음영향도와 다른 경계 설정 요 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은 해당 지역의 경작지 비율·인구밀도 등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도시지역: 소음영향도에 따른 단독주택이 속한 필지의 경계
- 2. 비도시지역: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 방법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경계 설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